

안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322
----------	-----

제출년월일 : 1994.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정이유

-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 '94 한국 방문의 해와 국제화 시대의 개막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 및 청결관리가 절실히 요청 되는바
- 시차원에서 공중화장실 및 청결관리 기준을 조례로서 제도화하여 위생적 유지관리는 물론 그동안 치부로 대두되었던 공중화장실 청결문제에 일대 개선을 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 시설은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 및 시설상태 유지 책무를 부여함 (안제3조)
- 공중화장실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안제4조)
-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 유지 관리 기준 설정 (안제5조, 제6조, 제10조)
- 다수인 이용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함. (안제12조)
-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부적합시설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 명령, 개선 이행 기간, 개선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 (안제14조, 제15조)
- 공중 화장실에 대해 시장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함. (안제16조)

□ 참고사항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 관리자의책무)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 (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범위)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 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경기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12.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전문휴양, 종합휴양시설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5.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6.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 2 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이상, 세로115센티미터이상 (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이상)일 것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 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

제6조(기타시설)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 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 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시설의 유지, 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유지, 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1회 이상 도색 할 것.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 관리상황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4 장 시 설 개 선 명령

제13조(시설점검)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2회(상, 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명령) 시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 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설치. 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유 료 화 장 실 승 인

제16조(유료화장실승인)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지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담관리인을 둘 것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할 것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 6 장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등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은 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조항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가. 제5조 제1, 2, 3, 4호 위반 나. 제5조 제5, 6, 7호 위반	제5조	20 10	40 20	60 30
2.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관리에 소홀히 한 때	제8조	10	20	30
3.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지 아니한 때	제9조	10	20	30
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때	제10조	20	30	50
5.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17조 (제2호 내지 제4호)	20	30	50

공 중 화 장 실 관 리 카 드

[별지 제1호 서식뒷면]

약 도

25

비 고

- 관리번호 : 등별 일련번호 부여
- 지역구분 : ①터미널 ②시장 ③역 ④공원 ⑤유원지 ⑥문화재 ⑦도로변휴게소
⑧시가지 ⑨주유소 ⑩항. 포구 ⑪선착장 ⑫운동장 ⑬기 타
- 관리주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00공단, 00조합, 00번영회, 개인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 중 화 장 실 개 선 명령서			명령서 번호 제 호
수	화장실소재지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인	주 소	(전화번호:)	
개선명령사항			
개선이행기간		년	월
안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명령을 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 중 화 장 실 개 선 명령 이 행 서		처리기간 5일	
제 출 자	화장실소재지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개선명령사항			
개선이행사항			
개선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안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였기에 이행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장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유료화장실승인신청서				처리기한 5일		
신	상호(명칭)					
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인	주소	(전화번호:)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전담관리인	(전화번호:)	설치년도			
다른법령에 의한 화장실 설치의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시설내역	면적 규모	㎡	이용인원 (일평균)	명		
	대변기	남	여	소변기	개	
		개	개			
	편의시설 · 용품	세면기	에어타월기	환풍기	화장지	비누
유					무	유
1회 사용료	원					

안산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날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 유료화장실 운영계획서(운영기간, 사용요금 등 명시) 1부
- 화장실의 설치장소 및 내부구조도 1부

149

[별지 제5호 서식]

승인 제 호

유료화장실승인서

대 표 자	상호(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담 관리인	(전화번호 :)			
설치 장소				
시설내역	대변기		소변기	
	남	여	개	
	개	개		
	세면기	에어타월기		환풍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 (인)

148

<별지 제5호서식 뒷면>

(변경사항)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안산시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안산시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인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 조 제 항	
납 부	성명 :
의무자	주소 :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
었으니 년 월 일까지
(00은행)에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안산시장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 조 제 항	
납 부	성명 :
의무자	주소 :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안산시장

(시군구통보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 조 제 항	
납 부	성명 :
의무자	주소 :
과태료금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안산시장 귀하

(개인보관용)

제 호 과태료납부영수증	
위반사항 :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 조 제 항	
납 부	성명 :
의무자	주소 :
과태료금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인